

답 변 서

사 건 2013두2341 재심청구의 소
원 고 임그루
피 고 서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
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
대표이사 회장 이 석 채

귀 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케이티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다 음

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

1.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1. 이전 판결의 결과

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와 관련, 이미 동일 사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누6383호(제1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0두8004호, 서울고등법원 2001재누15호(제2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4두6013호, 서울고등법원 2004재누122호(제3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5두7624호, 서울고등법원 2006재누171호(제4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7두17809호, 서울고등법원 2008재누236(제5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두5589호, 서울고등법원 2009재누189(제6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09두22010 사건,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62호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1두11372호, 서울고등법원 2011재누229호(제7 재심대상판결) 및 이에 대한 상고심 대법원 2012두12358호 사건, 그리고 이 사건 재심판정 대상인 서울고등법원 2012재누172(제8 재심대상판결)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 또는 각하로 판결이 확정되었으며, 위 각 판결에서 원고에 대한 피고보조참가인의 행위는 정당한 인사조치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.

2. 재심사유의 부존재

피고 보조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행위는 정당한 인사 조치임이 원심판결 및

위 관련 판결들로 밝혀졌을 뿐 아니라, 이 사건 원고의 재심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조 제1항 단서(다만,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,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)에 해당하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. 즉, 가사 이전 관련 사건에서 판단누락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단 누락과 같은 재심사유는 당사자의 공격, 방어방법 등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을 빠뜨리는 것으로서 판결 정본을 송달 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, 이러한 재심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판결정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(대법원 1989. 5.23 선고 88누5570 판결),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 1항 단서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.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.



나아가, 원고는 판결서의 이유에 원고의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의 표시가 누락되었다 주장하지만,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,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며(민사소송법 제208조), 판결서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, 직접적인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에 비추어 그 주장을 인용하거나 배척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도라면 판단 누락이라 할 수 없으므로(대법원 2008.7.10 선고2006재다218 판결),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따라서 원고의 재심

청구는 그 이유가 전혀 없다 할 것입니다.

3. 결론

그러므로, 원고의 재심청구는 부적법 하므로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3.3. .

주식회사 케이티

대표이사 이 석 채 (인)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

대법원 특별2부 귀중